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의 용어 변경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88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용어 변경	2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조문 정비	9
3. 국외직업소개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이관	17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용어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의 용어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변경하고, 인증 유효기간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5).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 ① ----- ----- ----- ----- ----- ----- ----- 선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선정업무-----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③ ----- 선정

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 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생략)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된 -----

-----.

④ -----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
-----.

1. -----
--- 선정된 -----
2. (현행과 같음)
3. 제6항에 따른 선정기준-----

4. ----- 선정된

⑤ -----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
---.

<삭 제>

⑥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조의5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¹⁾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유효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재인증받을 수 있음.²⁾

- 1)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생략)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생략)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해야 함.³⁾

개정안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의 용어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취지가 인증과 다소 다르므로 선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것임.

[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인증규제 정비 내용

1.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2.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3.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4.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포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1) 인증규제 정비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 2) 자세한 내용은 2024. 2. 2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참조

-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과 선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인증은 해당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제품 등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보건 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식품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 제도⁴⁾가 있음.

반면, 선정은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관 중에서 품질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것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제도⁵⁾가 있음.

즉, 인증 제도는 해당 기업이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선정 제도는 우수 기업·제품을 선택하여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가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구인자·구직자의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선택에 판단 지표로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개정 여부를

4) 「식품위생법」 제48조 등에 따른 법정 의무 인증 제도임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판단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노동부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직업사무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후에 인증을 신청한 기관을 평가하여 최저점수를 넘기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그 해부터 인증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정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고 전하면서⁶⁾ 인증을 위한 최저점수를 상향하고, 인증 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기관에게 순서대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제도 개편 이후에도 기관이 일정 점수를 넘기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된다는 점에서는 동 제도가 인증에 가까우나, 인증 기

6)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은 인증받으세요!」 (2024.4.23.보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전·후】 (위 보도자료 중)		
유형	기 준	개 편
선정 단계	▶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	▶ 최저점수 상향(영역별 100분의 50→ 60, 총점 700점→ 800점/1,000점 만점) ▶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 기본 운영상황 평가비중 축소 및 성과 배점 확대 ▶ 신청유형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전문화
인센 티브	▶ 인센티브 부족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시상 ▶ 여신금리 우대은행 확대
행정 경감	▶ 평가지표 중복 및 행정부담 가중	▶ 민간위탁사업 참여 시 가점 상향 ▶ 평가지표 효율화·간소화(19개→12개)

관 중에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시상한다는 점에서는 동 제도를 선정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짐.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그 서비스 품질을 공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지, 다수의 고용서비스 기관 중 우수 기관을 뽑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동 제도의 용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조문 정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규정한 조문에서 권한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도지사는 제외하는 내용임(안 제7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군수 등의 협력) <u>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36조(허가·등록 등의 취소 등) ①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군수
· 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군수·구청장-----

-----.

-----.

1.·2. (현행과 같음)

③ ----- 시장·군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8조 · 제19조 · 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

· 구청장-----

제36조의3(청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37조(폐쇄조치) ① -----

----- 시장 · 군수 · 구청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② ----- 시장·군수·구청장-----

-----.

③ ----- 시장·군수·구청장-----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전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시장·군수·구청장 ---

-----.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
----- 시장·군수·구청장-----

-----.

제44조(권한의 위임) -----

----- 시장·군수·구청장-----
-----.

제45조의3(포상금) ① -----

관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이 부과·징수한다.	③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규정한 조문에서 그 권한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음]’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세종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복 적용될 여지가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조문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대상 조문들은 2009년 10월 9일에 개정(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⁷⁾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특별법”) 제정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2023년 6월 11일과 2024년 1월 18일 출범하였음.⁹⁾¹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 세종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이 적용됨.¹¹⁾

강원·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각각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

7) 법률 제9795호

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12.27., 제정)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6.10.,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1.17., 제정)

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현행법률명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11) 「세종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¹²⁾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인 제주시과 서귀포시를 두고 있음.

즉, 현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조문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표] 현행에 따른 조문 적용 여부

구 분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 여부
세종특별시장	포함
강원특별도지사	미포함 (강원특별자치도 안의 시장·군수가 포함됨)
전북특별도지사	미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안의 시장·군수가 포함됨)
제주특별도지사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없음)

12) 「강원특별법」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전북특별법」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3. 국외직업소개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이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 그리고 국외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하고(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 30조제1항 단서 신설),

허가·등록·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해당 사업의 허가·등록·신고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안 제35조제1호 · 제2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 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 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 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 ----- ----- -----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 -----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

다만, 제18조에 따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

② (생략)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u>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신설> <신설>	<u>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 --- ----- -----. 1. <u>제18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u> 2. <u>제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u>
--	---

나. 검토의견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의2제2호),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소개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법 제2조의2제4호·제5호), 구

직자가 취업할 장소에 따라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법 제18조 및 제19조).

[표] 직업소개사업의 구분

취업할 장소 대가 지급 여부	국 내	국 외
무 료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유 료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현행법상 ① 국내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법 제41조),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법 제36조), 과태료 처분(법 제50조) 등 관리·감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 국외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하여야 하고, 이들의 위법한 사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감독청인 고용노동부장관(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¹³⁾

13)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한편,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 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의2제6호), 누구든지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0조제1항).

개정안은 ① 국외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신고·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 수행자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및 관리·감독 (안 제18조·제19조)	국내	무료	시장·군수·구청장	(현행과 같음)
		유료	시장·군수·구청장	(현행과 같음)
	국외	무료	고용노동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유료	고용노동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 신고 (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은 2023. 2.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업소개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중 고용·노동분야 과제

1.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2.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3.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4.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5.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 지도·감독

6.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권한

7.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8.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 2023. 2.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참조

문 의 처
02)6788-5538